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 지침†

- 1.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땅을 나누라 II

(여호수아 13:1 ~ 19:51)

이종윤 원로목사

### II.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남은 땅을 나눔

이스라엘 진은 길갈에서 실로에로 옮겨졌다. 실로는 아이 성과 게라십 사이에 있는 고산지대이다. 군사적 이유로 사령부가 이동했을 것이다. 남은 땅을 7등분하여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는 것이다.

#### 1. 베냐민 지파(18:11 - 28)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영역을 받았다(18:11). 이 지역은 큰 지경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다. 여기고, 아이, 벤엘, 기브온 등 특히 유다에 가까웠다. 후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베냐민은 남 유다에 속했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르게 보존했다.

#### 2. 시므온 지파(19:1 - 9)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이들이다. 그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놀랍다.

“...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도다”(창49:7).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시므온은 자신의 영토를 받지 못했다. 다만 유다 땅 안에 있는 땅을 할당받았을 뿐이다. 레위는 지파별 할당이 없었다. 레위는 다른 지파들의 영토에 문자 그대로 흠어졌다. 레위는 제사장이 되고 따라서 그들의 흠어짐은 다른 지파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이 되었다. 그들은 48개 도시에 흠어져 살았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고 대표했다.

#### 3. 스불론 지파(19:10 - 16)

비교적 작은 지파 넷이 북쪽에 정착했다. 스불론은 므깃도 평지 북편에 있었다. 갈멜 산의 동편이다.

#### 4. 잇사갈 지파(19:17 - 23)

잇사갈은 스불론과 함께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소생이다. 그들은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아들이다. 어려서 함께 성장하면서 가깝게 지낸고로 영토도 이웃하게 되었다. 잇사갈은 스불론 동편에 므낫세의 북편에 있었다.

#### 5. 아셀 지파(19:24 - 31)

북쪽에 있는 갈멜 산에서부터 시돈까지 지중해 연안에 있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다. 그러나 이방 도시들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특히 두로와 시돈이 그러했다.

#### 6. 납달리 지파(19:32 - 39)

아셀의 영토와 병행해 있다. 내륙에 위치하면서 가버나움, 가나, 벳세다가 여기에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 중 납달리와 스불론 즉 이방의 갈릴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다(사9:1 - 2).

#### 7. 단 지파(19:40 - 48)

비교적 남단에 위치한 단의 영토는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다.

이 모든 분배를 마친 후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 의 명대로 그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낫 세라가 주어졌다. 이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다(19:51).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만족스런 분배였다.

### III.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백성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여호수아는 신실했다. 90세가 넘는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무 늙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맡은 일도 내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전진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나안 강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모든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때까지 그는 자기를 위한 땅을 받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사람마다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는 땅을 나누어 여러 지파에게 소유케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책임 있게 살도록 격려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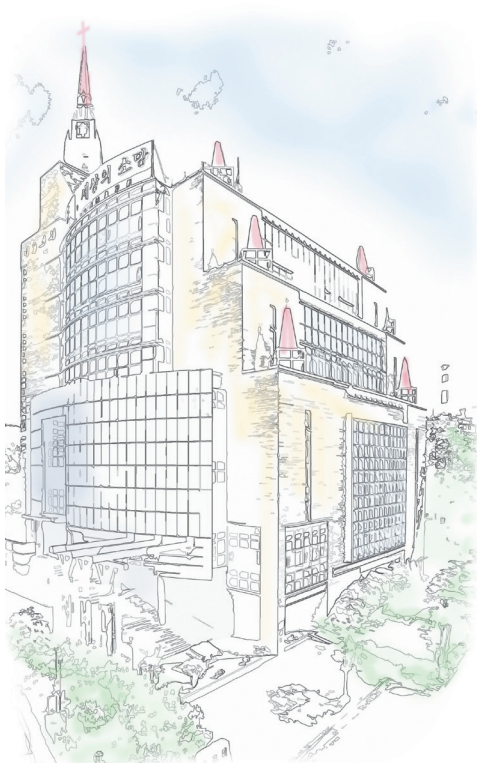
많은 지도자들이 남에게 일을 맡겨 놓고 자기는 타인의 일한 대가만을 즐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달란트 사용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유해야 한다. 지식, 거룩함,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은사를 소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신앙이다.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과 그 나라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주어졌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 순종하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전도는 문화 명령의 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를 위한 땅이 있지만 자기가 소유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 2018년 사명자대회 준비 시작하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로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삼아주소서"  
- 10. 7(주) ~ 11. 25(주) (50일간) -

2018 사명자대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울교회는 창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복음화, 교회전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뜻을 세우 달려왔다.

교회는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세우고,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

원선, 세상의 나침반이라는 사명을 받아,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목회 전략을 삼고,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하나님의 목회를 실천해 왔다.

현재 서울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어오던 사명자대회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세우기로 기도하며 2018 사명자대회를 갖는다.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종윤·홍순복 이선희 감우균·김연화1 백영자 오후근 송정윤 홍성미 한대석 고석규·한치종 이남성·최영란 강애자 유태왕 정춘해 윤요섭·안재희 정수길 청년부장태준·서민에 이승희 박광훈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 하박국 1~3장 -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는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암송 본문은 '하박국 1-3장'으로 하고, 교육1국 미취학부서에 한하여 하박국 3장, 기타 부서는 전장을 암송한다.

암송시간은 총 15분으로 제한하며 '부서별 예선'을 거쳐 '본선'을 진행하며 교육1국, 교육2~4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각각 진행한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성경으로 한다.

예선은 11월 4일(주일) 부서별로 진행하며 본선등록을 11월 11일(주일)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서기 김혜연 집사에게, 일반 장년 성도들은 사무국에 등록해 주기 바란다.

본선은 11월 17일(토) 오후 1시, 602호(휴게실), 609호(교육1국~미취학), 607호(교육1국~취학), 603호(교육2~4국), 606호(영어암송)에서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 믿음상(금상), 소망상(은상), 사랑상(동상), 장려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시상 및 발표는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대상에 한하여 실시한다.

대상 외 믿음, 소망, 사랑, 장려상은 부서별로 예배시 시상 및 발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기도제목

- 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린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 ②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 ③ 우리에게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주신 성령님 복음의 빛진 자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나이만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성삼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 ④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과 그 복음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 교회로 새롭게 하소서,
- 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실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 ⑥ 서울교회를 향한 각종 송사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판단케 하시어 하나님에 승리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기간 : 10. 07(주) ~ 11. 25(주) (50일간)

- 1) 발대식 : 2018. 10. 07(주일)
- 2) 결과보고 : 2018. 11. 25(주일)

주제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로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삼아주소서

### 특별새벽기도회(6일)

11. 19(월) ~ 11. 24(토) 새벽 05~06시

### 행동강령

- 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한다.
- ②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한다.
- ③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덕을, 자신에게는 절제를 생활화한다. (벧후 1:5-7)

### 사명자대회 세부실천방안

#### 말씀

- 1) 매일 말씀을 읽는다. (교회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추어서)
- 2)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 3)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 기도

- 1) 자율기도 : 50일간 개인별 기도한다. (50일간 각자 개인의 기도처소에서 스스로 작성한 기도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기도한다.)
- 2) 느헤미야기도 : 느헤미야가 수일동안 슬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서울교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기도를 매일 3분 이상, 50일간 진행한다.

### 조직

- 대 회 장 : 이종윤 원로목사 / 이성우 집사 정현구 집사
- 본 부 장 : 안인호 장로 · 지도교역자 : 장석남 목사 · 홍보분과 : 유은경 집사
- 차 장 : 예완식 집사 / 김규태집사
- 진행분과 : 김영희 집사 · 재정분과 : 김형상 집사
- 동원분과 : 김승록 집사 / 이종범 집사 하상영집사 임종현 집사 · 안내분과 : 백승갑 집사
- 기도분과 : 김혜연 집사 / 안내위원
- 교육분과 : 장윤기 집사 / 이승준 집사 · 봉사분과 : 김찬진 권사
- 차량분과 : 차영도 집사 / 권사회
- 차량부원 / 차량부원

# 이종윤 원로목사 외 13명 혐의없음 처분

## 이종윤 원로 목사·유태서 사무국장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업무방해·사기미수 - 혐의 없음 노문환 장로 외 11장로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업무방해·사기미수 - 각하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형제42558호
② 고 소 인 성 명	안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이종윤 ④ 주민등록번호
⑤ 피 명	별지 참조
⑥ 처 분 결 사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8. 31.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문서확인번호 2153-5937-0553-3800 발송번호 2-231-2018-176172 [의 명] 가.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업무방해 라.사기미수 [처분요지] 가,나,다,라-혐의없음(중거불충분)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형제42558호
② 고 소 인 성 명	안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노문환 ④ 주민등록번호
⑤ 피 명	별지 참조
⑥ 처 분 결 사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8. 31.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문서확인번호 2153-5937-0553-3800 발송번호 2-231-2018-176172 [의 명] 가.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업무방해 라.사기미수 [처분요지] 가,나,다,라-각하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형제42558호
② 고 소 인 성 명	안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유태서 ④ 주민등록번호
⑤ 피 명	별지 참조
⑥ 처 분 결 사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8. 31.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문서확인번호 2153-5937-0553-3800 발송번호 2-231-2018-176172 [의 명] 가.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업무방해 라.사기미수 [처분요지] 가,나,다,라-혐의없음(중거불충분)	

III. 주 문

1. 피의자 이종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유태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 피의자 노문환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4. 피의자 서문석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5. 피의자 이관규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6. 피의자 하인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7. 피의자 오광환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8. 피의자 양춘경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9. 피의자 최광성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10. 피의자 이계홍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11. 피의자 오지열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12. 피의자 송인권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13. 피의자 최형일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14. 피의자 차도훈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알아도 되는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종윤 및 피의자 유태서는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피의자 노문환, 피의자 서문석, 피의자 이관규, 피의자 하인선, 피의자 오광환, 피의자 양춘경, 피의자 최광성, 피의자 이계홍, 피의자 오지열, 피의자 송인권, 피의자 최형일, 피의자 차도훈에 대한 고소를 각 각하한다.

- ①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청구가 기각되고, 2017. 9. 11. 대한민국 재판국에서는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하여 박노철 지위에 대해 상충되기는 하나, 대한예총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이후에 있었던 점, 대한예총 헌법 제162조, 제163조에는 대한예총의 판결에는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예총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대한예총의 판결에 따라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7. 9. 11.부터 서울교회의 당회장은 결원된 상태로 볼 수 있다.

- ② 대한예총 헌법 제67조 제2항은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방)로 요청해 노회기 파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4항에는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임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은 '대리당회장의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는 헌법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원규 제7항 권징장, 제8항 부당선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같은 대한예총의 판결에 따라 당회장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 시까지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 이종윤을 '대리당회장'으로 선출하여 임무를 처리한 것이나, 피의자 이종윤이 동산인 예금관리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또한 위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당회장의 결원 시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서울노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임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이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사 (연)

지난 8월 31일(금)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42558호는 박노철 목사 측 고소인 안00이 **이종윤 원로목사·유태서 사무국장·노문환 장로의 11장로를 상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과 고소 각하 처분**하였다.

박노철 목사 측 고소인 안00은 지난 2017년 1월 14일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되어 당회를 운영, 결의 한 사항들에 대하여 위 4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과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대한예총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이후에 있었던 점, 대한예총 헌법 제162조, 제163조에는 대한예총의 판결에는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대한예총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대한예총의 판결에 따라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7. 9. 11.부터 서울교회의 당회장은 결원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중략)

위와 같은 대한예총의 판결에 따라 당회장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 이종윤을 '대리당회장'으로 선출하여 임무를 처리한 것이나 피의자 이종윤이 동산인 예금관리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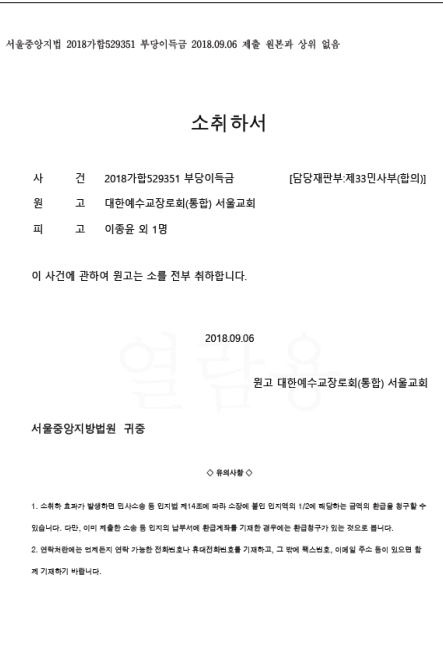
또한 위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당회장의 결원 시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서울노

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임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이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있었던 본안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이번 고소건 또한 혐의없음과 고소 각하 처분을 받았고, 곧 있을 박노철목사 직무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서울교회 분쟁은 이와 같은 법 판결을 근거로 순리대로 해결될 것이다.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 이종운 원로목사·홍순복 사모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박노철 목사 측이 취하한 것 밝혀져



박노철목사는 지난 2018년 5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종운 원로목사와 홍순복 사모를 상대로, 오정수장로가 교회의 모든 재정을 장악하고 관리한 것을 기회로 당회 결의 없이 은퇴 전 3년간 매월 900만원씩 도합 3억2,4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서울교회 명의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제기하였으나 9월 6일 갑자기 이를 취하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개인명의 통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이종운 원로목사는 교회설립 직후부터 홍순복 사모 통장을 통해 매월 사례 전액을 수령한 사실과 위 금액이 모두 교회의 적법한 재정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이었음에도 이를 다시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를 취하한 것이다.

본래 교회 명의의 교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제기할 수 없어 당연히 각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매년 당회에서 예산을 세워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적법하게 지출된 목회자 사례비를 마치 몰래 공모하여 횡령한 것처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제 승산이 없음이 확인되자 소송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취하한 것인바, 이제부터라도 제발 원로목사는 물론 특정 장로나 성도들을 괴롭게 할 목적만을 가지고 결국 소송한 헌금으로 지출되었을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악의적인 민·형사상의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등정

■ 준공감사예배 : 15교구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전광영 아트센터&그라운드 미술관, 용인시 수지구 샘말로 122(고기동, 뜰사랑 옆) 031-265-8500, 9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

■ 득녀 : 14교구 정성우2 성도 박지혜4 성도

■ 금주의 식사 : 함박스테이크  
임광호 집사 김정미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 새 팀파니 입고

###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



▲ 이번에 구입한 팀파니는 professional 1, Copper 1, Hammered 1로 북통이 크고 각이 커서 사운드가 더 깊고 중후한 것이 특징이다

박노철 목사측의 용역들을 대동하고 교회를 점거한 후, 1층으로 내려와 예배를 드리며 임대 팀파니를 사용하던 중 뜻있는 성도들(김광욱 김성준 안홍희 이준호 집사)이 하나님께 더욱 경건하고 올바른 예배를 위해 새 팀파니를 구입하기로 하고 특별헌금을 드렸다.

현재의 팀파니는 새 것을 구입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개인이 드린 특별헌금(이준호 집사)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었는데 이번에 새 팀파니로 교체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본당에서 쓰고 있는 팀파니는 노후되어 앞으로 예배당을 정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팀파니는 찬양대실이나 웨민홀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주님의 몸뚱신 서울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이리신 광고회당에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히12:13-16, 함3:2) 라는 주제로 모이는 제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모든 헌안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다루어지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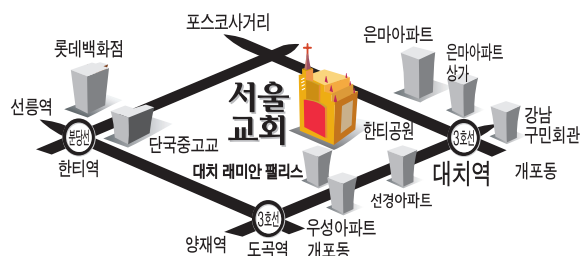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9일	주일	겔 36-38		스 1-4	
9월10일	월	겔 39-41		스 5-10	
9월11일	화	겔 42-45		느 1-8	
9월12일	수	겔 46-48		느 9-13	
9월13일	목	단 1-2		예 1-10	
9월14일	금	단 3-4		욘 1-7	
9월15일	토	단 5-7		욘 8-14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요예배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